2023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2023 핵심 개정세법] 발간에 부쳐

세무사 회원님, 그리고 국민과 기업 납세자 여러분!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사의 법적 사명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매일매일 구현하는 직무 자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가슴과 최신의 정보 및 콘텐츠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매년 새롭게 나오는 개정세법은 국민과 기업에게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명인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성실납세에 필요한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먼저, 가장 유용하게 세무사 회원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 세법개정내용을 담아 '2023 핵심 개정세법'을 발간합니다.

'2023 핵심 개정세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2023.7월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세법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는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고 새로이 추가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상 적용할 때는 반드시 개정세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성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1만6천 세무사 법정단체로서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 세무사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최신 조세정보는 물론 조세이슈에 대한 충실한 검토자료를 국민과 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과 활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 재 이

CONTENTS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민·기업 납세자용)

01 부동산 세금제도 ····· 3
02 주식 세금제도 ····· 4
03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 4
04 국민생활 세금제도 ····· 7
05 가업승계 세금제도 ····· 14
06 기업경영 세금제도 ····· 15
07 기업세금 감면제도 ····· 26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세무사·전문가용)

01 국세기본법 ····· 35
02 국세징수법 ····· 38
03 소득세법 ····· 40
04 법인세법 ····· 48
05 부가가치세법 ····· 51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3
07 조세특례제한법 ····· 55
0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76
09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81

CONTENTS

2023 개정세법 현행 – 개정사항 비교 (상세본)

01 • 국세기본법

01 /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기법 §26의2⑥7 신설) ····· 85

02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국기법 §28) ····· 86

03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국기법 §35①) ····· 86

04 /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국기법 §47의3) ····· 87

05 /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 88

06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국기법 §49①) ····· 89

07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국기법 §59②, 국기령 §62) ····· 89

08 /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신설
(국기법 §59의2) ····· 90

09 /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
(국기법 §67) ····· 90

10 /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
(국기법 §67) ····· 91

CONTENTS

11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
(국기법 §78) ····· 91

12 /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국기법 §81의13) ····· 92

13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
(국기법 §81의15) ····· 92

14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
(국기법 §81의15⑤) ····· 93

15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 93

16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국기령 §55의2) ····· 94

02 • 국세징수법

01 /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
(국징법 §55④) ····· 94

02 /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
(국징법 §56의2) ····· 95

03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신설
(국징법 §56의3) ····· 96

04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국징법 §57) ····· 97

05 /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
(국징법 §71) ····· 98

06 /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국징법 §80) ····· 98

07 /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국징법 §84②) ····· 99

08 /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국징법 §84의2) ····· 99

09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 100

03 • 소득세법

01 /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 101

02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 101

03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득법 §12(3)마) ····· 102

04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 102

05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14) ····· 103

06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법 §17) ····· 104

07 / 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25①) ····· 104

CONTENTS

08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⑤⑥) ····· 105

09 /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2) ····· 106

10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 106

11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59의4) ····· 107

12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 108

13 /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소득법 §86, 소득령 §149의3 신설) ····· 108

14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 §88) ····· 109

15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소득법 §92 신설) ····· 110

16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소득법 §95) ····· 111

17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소득법 §97의2) ····· 112

18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56의9 신설) ····· 112

19 /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4②,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5②, §98의6④) ···· 113

CONTENTS

20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 113

21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소득법 §164의3) ····· 114

22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 114

23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 ····· 115

24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5①(8) 신설) ····· 116

25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소득령 §154) ····· 116

26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소득령 §154) ····· 118

27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
(소득령 §155) ····· 118

28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
(소득령 §155~㉕) ····· 120

29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
(소득령 §167의3) ····· 121

3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 122

CONTENTS

04 • 법인세법

01 /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 123

02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법 §18) ····· 124

03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법 §18의2) ····· 125

04 /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법인법 §76의12) ····· 126

05 /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
(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22) ····· 126

06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법인법 §113) ····· 127

07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법인법 §120의4) ····· 127

08 /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령 §12) ····· 128

09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령 §19, 소득령 §55) ····· 129

10 /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령 §39) ····· 130

11 /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령 §57) ····· 131

12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법인령 §72) ····· 131

CONTENTS

05 • 조세특례제한법

0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조특법 §7) ····· 132

02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7) ····· 132

03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의2) ····· 133

04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 134

05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134

06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 135

07 /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13①) ····· 136

08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
(조특법 §13의2) ····· 137

09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
(조특법 §14) ····· 138

10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조특법 §16) ····· 139

11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 ····· 140

12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8의2) ····· 141

CONTENTS

13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25의6) ····· 142

14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특법 §25의7 신설) ····· 142

15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8의4) ····· 143

16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8) ····· 143

17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30, 조특령 §27) ····· 144

18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3) ····· 144

19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 145

20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30의6·§71) ····· 146

21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3) ····· 146

22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 147

23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2) ····· 148

24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8) ····· 148

25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52) ····· 149

26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2) ····· 149

27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
(조특법 §66~68) ····· 150

28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조특법 §69) ····· 151

29 /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조특법 §70의2) ····· 152

30 /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
(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 153

31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7) ····· 154

32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7의2) ····· 154

33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7·85의9) ····· 155

34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 156

35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 156

36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 157

CONTENTS

37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조특법 §88의5) ····· 158

38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19) ····· 159

39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 159

40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조특법 §91의22) ····· 160

41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조특법 §91의24) ····· 161

42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의2, §122의3) ····· 161

43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 ····· 162

44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조특법 §99조의4) ····· 162

45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 163

46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10) ····· 164

47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3) ····· 165

48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7) ····· 165

49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100의14~18, 조특령 §100의18) ····· 166

50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100의28·§100의29) ····· 167

51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의5) ····· 168

52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104의11) ····· 168

53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2) ····· 169

54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104의15, §127) ····· 169

5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조특법 §104의24, §118의2) ····· 170

56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32) ····· 171

57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3 신설) ····· 172

58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 173

59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105의3 신설) ····· 174

60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 175

CONTENTS

61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3) ····· 175

62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4의5) ····· 176

6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6①9) ····· 176

64 /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①9의2) ····· 177

65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①1) ····· 177

66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 신설) ····· 178

6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 178

68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 179

69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2) ····· 179

70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3) ····· 180

71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6②) ····· 180

72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 ····· 181

73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조특법 §117) ····· 181

74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조특법 §117) ····· 182

75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8①) ····· 182

7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 (조특법 §121의10, §121의11) ····· 183

77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121의17, §121의19) ····· 183

78 /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21의19) ····· 184

79 /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⑦,⑧) ····· 184

80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6~31, 조특법 §117) ····· 185

81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121의33) ····· 186

82 /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21의34) ····· 186

83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21의35) ····· 187

84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의3) ····· 188

CONTENTS

85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2의4) ····· 189

86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 190

87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 191

88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⑨) ····· 191

89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조특법 §133) ····· 192

90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136) ····· 193

91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조특령 §11의3③·§11의4④) ····· 194

92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특령 §65) ····· 194

93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조특령 별표7의2, 부칙 별표6의2) ····· 195

94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7) ····· 196

CONTENTS

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 197

02 /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상증법 §50, 상증령 §43) ····· 198

03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53의2) ····· 199

04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증령 §15) ····· 201

07 • 부가가치세법

01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2①) ····· 202

02 /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 203

03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
(부가법 §60①, 부가령 §11⑥) ····· 204

04 /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 204

05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5) ····· 205

06 /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
(부가령 §40①13) ····· 206

CONTENTS

07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10의4①③, 시행규칙 §2①) ····· 207

08 •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01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소령 §2의2) ····· 208

02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세법 §8, 주세령 §7) ····· 209

03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세법 §8①) ····· 209

04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7) ····· 210

05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
(주류면허법 §13) ····· 211

06 /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주류면허법 §38) ····· 212

07 /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인지세법 §8③) ····· 212

08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교육세법 별표) ····· 213

09 /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교육세법 별표) ····· 213

10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특법 부칙 §2) ····· 214

CONTENTS

0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 개선
(국조법 §16) ····· 214

02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국조법 §51의2 신설) ····· 215

03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국조법 §54) ····· 215

04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58, §59, §91) ····· 216

05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
(국조법 §61①1가) ····· 217

06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 217

07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 §100② 신설) ····· 218

08 /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
(국조법 §61①6) ····· 218

09 /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
(국조법 §61①18, §79①) ····· 219

10 /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
(국조법 §62④) ····· 220

11 /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 220

12 /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
(국조법 §68⑤ 및 국조령 §119 신설) ····· 221

CONTENTS

13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 §69④ 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 222

14 /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 및 국조령 §125 신설) ····· 222

15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 223

16 /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
(국조법 §73⑥ 신설) ····· 224

17 /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
(국조법 §76④ 및 국조령 §132④ 신설) ····· 224

18 /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⑥ 및 국조령 §141 신설) ····· 225

19 /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
(국조법 §82②) ····· 226

20 /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국조법 §84⑤ 신설) ····· 226

21 /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국조법 §87① 및 국조령 §150 신설) ····· 227

22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조법 부칙 §1) ····· 227

23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국조령 §101·102 신설) ····· 228

0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민·기업 납세자용)

[유의사항]

'2023 핵심 개정세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2023.7월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세법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고 새로이 추가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상 적용할 때는 반드시 개정세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01 부동산 세금제도

(조특법)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주식 세금제도

(소득세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하여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다.

(조특법)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이 모두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03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한국세무사회 입법건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세법)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

(소득세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등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1.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연 3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2024.1.1. ~ 2024.12.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조특법)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 → 800만원으로 상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조특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규모) 소득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했다.

(2024.1.1. 이후 월세부담 분부터 적용)

(조특법)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2022년 개정세법)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04 국민생활 세금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혼인 또는 출산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후 혼인불가시 처리)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

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세징수법)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득세법)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연장)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가 많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했고, ▲(고가주택은 2주택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2026.1.1. 이후부터 시행)

(소득세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한국세무사회 건의안]

세법상 '주택'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했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 신설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간략하게 표로 표시하여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소득세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보유기간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양도세 이월과세시 증여자 지출분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공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가 지출한 것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하는 국세 범위 명확화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국세우선권은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에 한정됨을 명시하였다.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전 소유권자의 체납세금이 있는지와 체납세금이 있다면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빠른지를 파악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모두 제외

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잘못 압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되, 잘못 압류한 경우는 압류가 있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국세징수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하여 매수자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다.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소득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특법)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범위를 2000만원까지 확대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출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2025년 이후 배당소득부터 비과세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부 한도 상향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한을 2026.12.31.로 3년 연장하고, 저축 납입액 중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적금액의 범위를 2024.12.31.까지는 월간 40만원, 2025.1.1.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55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조특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전환가입시도 허용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경우 소득공제 제외금액은 다른 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된다.

(해당 저축을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

(조특법)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청년도약계좌 연납 납부한도(840만원) 예외 적용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하고 ▲가입 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입을 허용하였다.

(20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급여인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자녀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한후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정금액의 90% → 95%으로 확대해 지급하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조특법) 국민생활과 관련된 환급·감면·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인지세 면제 대상자에게 인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

국제기관의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202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조법) 해외신탁 설정 및 이전자료 제출의무 부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

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시행령)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하고,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20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한시도입한 생맥주 경감세율(△ 20%) 적용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했다.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소득세 6 ~ 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 ~ 50만원 → 50 ~ 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05 가업승계 세금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상증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 대분류) 업종 변경을 허용하여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되어도 추징되지 않는다.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 → 120억원까지 확대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증여일 10년전 ~ 증여후 5년 이내)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06 기업경영 세금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구재이 회장 공약, 한국세무사회 입법안]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 세액공제 신설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다.

(소득세법)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법인세법) '외국인 통합계좌'에 의한 명의인 원천징수 제도 신설

지급받는 개개의 외국인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외국인 통합계좌'(외국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투자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미적용)하며,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별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법인세법)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합리적 조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

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였던 것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임직원의 국외주식 기준 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임직원이 국외지배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 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주식 기준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연결모법인과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지만, 합병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나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등 연결모법인 합병 시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다.

(법인세법)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의 분기별 제출시기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연간 거래집계표 제출시기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로 명시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환 익금산입

잉여금 중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인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024.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2021년부터 공익법인 지정방식이 변경에 따라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와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받은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재산총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산세만 200%를 부과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조특법)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과세이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특례(4년 거치 3년 분할)는 3년 연장하였으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및 전환을 위한 주식취득시한은 2026.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하였다.

(조특법)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❶: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기업)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을 신설하는 기업 ▲(감면소득) 해당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하고,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의 경우는 2,000만원) ▲(최저한세) 100%감면 기간의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50% 감면기간만 적용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❷: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12.31.일까지 양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한 경우 적용받는다.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❸: 기회특구펀드 투자소득 분리과세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3억원에 한해 2015.12.31.까지 이자·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조특법)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폐업한 기업인이 재기하였을 경우 3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특례를 신청하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도 적용가능 하도록 했다.

(조특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기 신청대상 폐업한 기한이 2023.12.31. → 2026.12.31.까지, 재기사업자 신청기한은 2026.12.31.→ 2027.

12.31.까지 연장되었다.

(조특법)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입법]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 → 10년으로 늘렸고,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 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은 매년 실질 대여금의 10%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대손(貸損)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특법)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를 추가하여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조특법)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추징 사유 중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에 대한 예외 사유로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20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 범위 확대. 합병 또는 인수하는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금액'{= MAX [① 특허권등 평가액 합계, ②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

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의 10%를 합병 또는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소득은 제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득은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했다.

(20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신성장·원천기술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원대상 추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8개 기술과 사업화시설 4개가 새로 추가했고, (20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 262개 기술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한다.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 등 특례제도 일몰 적용(종료, 연장)]

적용기한	감면 등 특례(조문)
종 료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7)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3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106①9)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121의 10, §121의11)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22의4)
연 장 (2024.12.31.)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28의4)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91의20, 영§93의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96의3)
연 장 (2025.12.31.)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 ~ 22)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7)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8)
연 장 (2026.12.31.)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의2)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18의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30, 영§27)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0의3)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4, §39, §40, §44)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의2)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46의8)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52)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62)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66 ~ 68)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77의2)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5의7·85의9)

적용기한	감면 등 특례(조문)
연 장 (2026.12.31.)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7의7, 영§81의4)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91의19)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99의6·99의8, 영§99의6)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및 재기기준일 연장(§99의10)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2) • 국가 등 공급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①3, 3의2)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2)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6①3)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4의5)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의2①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106의7)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111의2)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의3)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6②)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118①) •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3⑩, §121의25⑦,⑧)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1의26~31, §117)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121의33)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2의3)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126의7⑨)

(국조법)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규정 삭제)

(국조법)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

▲(국가, 지자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때도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무국적 고정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 최종 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고정사업장 소재국가가 과세않는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 ▲(정부소유 지분은 제외)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5천만 유로 이상) 계산할 때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이라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화,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하는 단서 신설,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 해당국가 소재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

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추가세액을 0으로 만들기위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국이 부과하는 세금)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본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기업별 배분방식을 ①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하고, 적용방법은 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환기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전환기 사업연도(2026.12.31. 이전 개시, 2028.6.30.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부칙)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법인세법) 2023년 소득분 법인세율 각 구간별 1%씩 인하로 인해 법인 세부담 감소(2022년 개정세법)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되어 2023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 종전 10% → 9%, 20% → 19%, 22% → 21%, 25% → 24%가 1%씩 인하되어 법인의 세 부담이 경감적용된다.

(2023년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령 별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 13개 업종 추가(2022년 개정세법)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소매업 ▲자동차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주차장운영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이 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대상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득법)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전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2022년 개정세법)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법, 법인세법) 기부금·접대비의 명칭변경(2022년 개정세법)

(기부금) 50~10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 10~30% 한도 손금산입기부금 → 일반기부금(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202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2022년 개정세법)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제출대상 편입, 매월 제출로 확대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전부제출시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면제(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7 기업세금 감면제도

(국세기본법)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권 보장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했다.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되는 지연가산세(1%)의 가산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법인'도 불복 청구(이의, 심사, 심판) 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24.4.1. 이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인세법)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감액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 항목으로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추가하였다.

(20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연결법인이 해산시 신고기한을 추가하고, 연결관계에서 벗어날 경우, 종전 중간

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까지 추가신고 하도록 했다.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

'연결집단'(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 결손금통산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령, 소득령)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은 손금·필요경비로 전액 인정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조특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때 당해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준비율(50%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30%)의 초과 시점을 당해연도 외에도 다음연도에 충족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수입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부가세 과세공급시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시 의제매입

세액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발급매출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 한도로 1.3%로 우대하여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포기후 3년 내도 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범위라면 재적용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024.7.1. 이후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으려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조특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하도록 규정했다.

(조특법)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민간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소득공제,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각각 3, 7, 10%였던 것을 5, 10, 15%로 확대하고, (추가공제율)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10, 10, 15%를 추가하도록 신설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조특법)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으로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출자액의 3%를 공제하되,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된다. 공제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정되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조건으로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인세·배당소득세는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는 2024.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한국세무사회 입법건의]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한다.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조특법)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합리화

'동업기업 과세특례'(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은 과세하지 않고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과세)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특법)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용역제공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조특법)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종료, 환급제도로 전환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한다.

(조특법)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금 관련 제품을 비롯하여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금 거래계좌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조특법)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 10% 추가 손금산입

전통시장 안에서 소비성서비스업체(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분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

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특법)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례적용기한(2025.12.31.까지)을 폐지하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2023 세목별 핵심개정세법
(세무사·전문가용)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1 국세기본법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국기법 §26의2⑥7호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12.31. 공포, 2024.1.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국기법 §28①4)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명확화(국기법 §35①3-2 단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1-2호 신설, §47의4③7호, 국기령 §27의5)

상속·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해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평가방법차이로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함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4호 신설)

선 세액공제 후 시설 인정(조특령 §21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에 추가함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국기법 §제49①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되는 지연가산세(1%)의 가산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함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법 §59의2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 법인(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도 불복 청구(이의, 심사, 심판) 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4.1. 이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조세심판원 관련 개정 내용

- 조세심판관 임명철회 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3년, (기존) 중임제한 → (개정) 1차례 연임 가능(국기법 §67),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12명 이상 20명 이내,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구성)(국기법 §78)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의13②)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도의 내용 및 기간'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1의15)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요건을 완화함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3)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를 위해 심사하지 않는 결정에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확히 함

02 국세징수법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규정 정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짐

(2024.1.1.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56의2)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가 신설됨. 물리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압류 방법과 압류 효력, 압류 통지 등의 규정 추가.

(2024.1.1.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전자등록주식 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신설(국징법 §56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추가됨

(2024.1.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국징법 §57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확히 함(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공매 보증 반환 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④)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함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② 신설)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추가됨

(20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84②)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

(2024.1.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84의2)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이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함

(20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03 소득세법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2호 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시행령 개정 사항)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3호 마목·머목, §12, 제5호 아목, §59의2, §59의4②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3) 공제대상에 손자, 손녀 추가되었고, 공제세액은 기존의 내용보다 둘째 한도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음
   (손자녀 적용대상은 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둘째 세액공제 인상액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소득법 §12, 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

는 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③9호다목)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③)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을 현행 11%에서 10%로 인하함

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

또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3주택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는 간주임대료 소득 과세규정을 고가주택*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함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주택요건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는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소득법 §59의4⑧)

2024.1.1. - 2024.12.31.까지 1년간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 가산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유예(소득법 §81의11, §164의3, 법인법 §75의7)

1)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관련 가산세 규정도 2년 유예함

○ 지연제출가산세(0.125%)적용요건 시행시기 유예: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 (2026년 시행)
  불분명금액이 5% 이상인 경우 가산세 면제 (2026년 시행)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 대상 기간 조정: 2026.1.1. ~ 2026.12.31.(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026.1.1. ~ 2027.12.31.)에 지급하는 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86 1호)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원천징수함.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됨.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은 소득세법 제93조의 2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 내용으

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표로 표시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 결정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액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① + ②)*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함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① 보유기간 공제율(최대 40%):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②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 계산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 계산에 포함

(20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됨)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56의9 신설)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 원래는 지급받는 개개의 외국인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미적용)를 하게 되며,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해짐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됨)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156의2⑤, §156의4②,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5②, §98의6④)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다음 달 10일"이후 5년 이내로 변경됨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명칭이 변경됨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시기는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6①)

월 300만에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8) 신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정비되어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이 재배열됨, 관련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됨

<table>
<tr><th>구 분</th><th>규 정 내 용</th></tr>
<tr><td>①항 (現 ①)</td><td>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짧은 단문 사용 및 호, 목 등을 활용하여 요건 등 분리 기술</td></tr>
<tr><td>②항 (現 ⑦)</td><td>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td></tr>
<tr><td>③항 (現③,④)</td><td>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도표화
<table>
<tr><th>구 분</th><th>비과세 범위</th></tr>
<tr><td>주택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td><td>건물 + 토지 전체</td></tr>
<tr><td>주택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td><td>건물 + 토지 중 주택 부분
(「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 포함)</td></tr>
</table></td></tr>
<tr><td>④항
(現 ②,⑤,⑥,⑧,⑫)</td><td>• 보유·거주기간 계산 원칙
•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td></tr>
<tr><td>⑤항 (現 ⑨)</td><td>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td></tr>
<tr><td>⑥항 (現 ⑩)</td><td>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td></tr>
</table>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가 도표화됨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table>
<tr><th colspan="3">도시지역</th><th rowspan="3">도시지역 밖</th></tr>
<tr><th colspan="2">수도권</th><th rowspan="2">수도권 밖</th></tr>
<tr><th>주거·상업·공업지역</th><th>녹지지역</th></tr>
<tr><td>3배</td><td colspan="2">5배</td><td>10배</td></tr>
</table>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이 신설되고 규정이 정비됨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1세대 1주택 특례 **개괄규정**(신설)
②항	**일시적 1세대 2주택**(現 ①, ⑯)
③항	**상속주택**(現 ②, ③, ⑲)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現 ④)
⑤항	**혼인합가 주택**(現 ⑤)
⑥항	**문화재 주택**(現 ⑥)
⑦항	**농어촌 주택 관련**(現 ⑦, ⑨ ~ ⑭)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現 ⑧)
⑨항 ~ ⑫항	**장기임대주택**(現 ⑳ ~ ㉕)
⑬항	기타(現 ⑮, 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⑳ ~ ㉕)

유사 성격 조항(現 20, 21, 23항)을 호,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하며, 정의 규정 신설(①항개괄규정 內) 및 복잡한 내용은 전형적 예시를 도표로 제시함

구분	규 정 내 용
⑨항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現 ⑳ + ㉑ + ㉓)
⑩항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現 ㉒)
⑪항	특례 적용 신고(現 ㉔)
⑫항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現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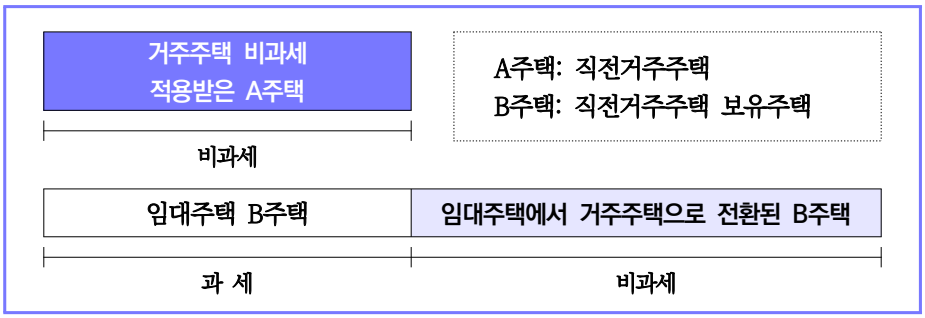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주택에 대한 개괄규정이 신설됨. 이를 통해 13가지 유형을 소개하는 표 신설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정함

구 분	유 형
1호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외 소재 저가주택
2호	장기임대주택
3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4호	장기 사원용 주택
5호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6호	문화재주택
7호	상속주택
8호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
8호2	장기 어린이집
10호	일반주택
1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
12호2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주택
1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이 확대. 기존의 의무발행대상 업종에서 13개의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1개 업종에 대한 정정도 추가됨

(20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추가: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정정: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04 법인세법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법인법 §5②③)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 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이 각각 납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앞으로는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 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20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는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법인법 §18)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2024.1.1. 이후 감액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 항목으로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추가함

(20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됨)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2)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기한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까지 추가신고하도록 개정됨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법인법 §76의19 ⑤ 신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정산할 수 있도록 함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연결집단: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집단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법인법 §98의8 신설)

외국법인 또는 국외 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되, 외국법인 또는 국외 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및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됨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분기별 거래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연간 거래집계표 제출시기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정됨.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익금산입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추가됨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손금·필요경비에 추가됨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39)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가 변경됨. 공익법인 지정 방식이 변경되어,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와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청기간이 당초 2023년 2월 3일에서 2023년 10월 10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됨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이 추가되며,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됨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이 명확화됨.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05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부가법 §8⑨)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신설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 명확화(부가법 §10조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 연장(부가법 §42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부가법 §46)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60조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2024.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부가법 §60④)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부가법 §70④⑤ 신설)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

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7.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상증법 §42의3①3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상증법 §48②7호 및 §78⑨, 현행 §48조⑪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써 출연재산총액의 1퍼센트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산세만 200%를 부과하도록 개정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단,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의무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에 추가공제 도입(상증법 §53의2 신설)

1)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임

2)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음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상증법 §71②2호)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면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을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 대분류) 업종변경을 허용함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07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하도록 규정함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③)**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됨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기술 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 ~ 2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인수 시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하는 과세 특례제도에서 취득기간을 (기존) 주식 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였으나, (개정) 최초취득일부터 해당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함

(20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내 처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조특법 §13조, §13의2②, §14① 및 §16①)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5의6①, §25의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됨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종전) 대/중견/중소: 3/7/10%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신설)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조 및 §18의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2026. 12.31까지 3년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7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

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으로, 대상 콘텐츠는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이 해당됨. 단,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됨. 공제율은 3%임

공제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출자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4)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의 적용기한이 '24.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됨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③, §제30①, §30의3① 및 ①③)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30의6① 및 ④)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업종유지 관련 사후관리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 허용됨. 연부연납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저율과세 구간 확대: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은 관계로 종료됨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39, §40, §44)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 과세이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분할납부 특례(4년 거치 3년 분할)가 3년 연장됨

(법률 제16835호)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및 전환을 위한 주식취득시한을 2026.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

농공단지(영으로 정함)에 입주하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영으로 정함)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 68)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 조건을 추가함. 또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법인세·배당소득세: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024.1.1. 이후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2)

경영회생지원사업 대상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추가됨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농업인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까지 확대됨. 또한, 대상농지에 대

해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 외에 축산에 사용한 농지까지 확대됨 (20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 및 85의9)**

공익사업으로 공장 또는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7②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2) 주택관련 차입금 상환에 관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조특법 §87⑤)
종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함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91의20①·②·④ 및 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조특법 §91의24)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시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가 단서에 추가되었고, 해당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출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함
(20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조특법 §91조의19)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한을 2026.12.31.로 3년 연장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기존 월 40만원 한도에서 2024.12.31.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025.1.1.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으로 함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조특법 §91의22)

청년도약계좌 연납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으로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 신청하고, ② 가입 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경우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일시납입을 허용함

(20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조의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한도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

(20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의4)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함.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

연도부터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적용기한) 2026.12.31.
(20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3)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함.
(요건) ① & ② & ③
①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②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12.31일까지 양도 ③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4)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신청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자도 해당 특례의 대상에 추가됨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적용대상자의 요건이 2023.12.31.이전에 폐업하고 2026.12.31.까지 재기하는 경우로 연장됨. 또한 신청기한이 2026.12.31에서 2027.12.31까지 연장됨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함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조의7②)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조의28①2호 및 §100의29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 §100조의15, §100의16 및 §100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을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하여,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 104의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기존 2024.1.1. ~ 2025.12.31.'에서 '2026.1.1. ~ 2027.12.31.'로 개정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104의11·§104의12)

종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가능했으나, 개정으로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이 포함됨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 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104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조특법 §104조의24 및 §118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❶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7년 100% + 3년 50%
❷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 관세 감면
  ⓐ 완전복귀: 5년 10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부분복귀: 5년 50%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업종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법률로 상향)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한 경우(추가 입법)
(20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 **(적용요건)** ❶ ~ ❹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❶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❷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❸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❹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매년 10% 상향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조특법 §105의3 신설, 조특법 §106조①)**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2)**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9)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됨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06①9의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전기·수소전기 버스를 추가함

(20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1)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 신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금 관련 제품을 비롯하여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됨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99%로 경감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②3)

인지세 면제 대상자에게 인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2)

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조특법 §117①5)
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조특법 §117①16)
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조특법 §117①23)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

중소·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25.12.31.까지 연장(조특법 §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25.12.31.까지 연장(조특법 §121의9)**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10, §121의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 적용기한이 종료됨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및 §121의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 특구에 평화경제특구를 추가함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1의19)**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추징사유중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에 대한 예외 사유로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시는 추징 제외함

(20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⑦,⑧)**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자회사 및 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및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 ~ 31)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됨

또한, 월세에 대해 적용대상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이 7,000(6,000)만원에서 8,000(7,000)만원 이하로 천만원 상향되었고,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한도액이 상향됨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됨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조특법 §126의2②)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한도 100만원)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36⑥)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체(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 지출한 것은 제외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례적용기한(2025.12.31.까지)을 폐지함으로써 계속 지원함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⑨)**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의 적용기한이 종전 2023.12.31.일에서 → 2026.12.31.로 3년 연장됨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①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①, ② 모두 해당한 경우)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봄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의3③·§11의4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 범위 확대. 합병 또는 인수하는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

업의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 또는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20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득은 제외됨
(20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조특령 별표7의2, 칙 별표6의2)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이 8개 기술과 사업화시설 4개가 추가됨
(20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에서 262개 기술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이 추가됨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몰기한 종료 및 연장 구분

적용기한	관련 내용(관련조문)
종 료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7),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3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106①9),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121의10, §121의11),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22의4)
연 장 (2024.12.31.)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28의4),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91의20, 영§93의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96의3)
연 장 (2025.12.31.)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7),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8)
연 장 (2026.12.31.)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의2),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18의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30, 영§27),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0의3),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4, §39, §40, §44),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의2),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46의8),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52),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62),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66~68),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77의2),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5의7·85의9),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7의7, 영§81의4),

적용기한	관련 내용(관련조문)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91의19),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99의6·99의8, 영§99의6),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23.12.31. 이전 폐업) 및 재기 기준일(2026.12.31.까지 재기) 연장(§99의10),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2),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①3, 3의2),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2),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6①3),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①4의5),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의2①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106의7),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111의2),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의3),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6②),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118①), •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3⑩, §121의25⑦,⑧),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1의26 ~ 31, §117),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121의33),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2의3),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126의7⑨)
기 타 적용 기한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2026.1.1. ~ 2027.12.31.(§104의5)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126의3)

0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국조법 §16②)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단서 규정 삭제)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국조법 §36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51의2 신설)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해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 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 운영 가능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1호 및 2호)

국제기관의 종사자*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함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③ 및 §91④ 신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026.1.1. 이후 자료 제출).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법률 제19191호 국조법 §61①1가·2나, 11)

1)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무국적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3)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5천만유로 이상)'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정부기업과 그 연결된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법률 제19191호 국조법 §61①3)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

-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법률 제19191호 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하는 단서를 신설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법률 제19191호 국조법 §69③④ 신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국가별 실효세율: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법률 제19191호 국조법 §70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법률 제19191호 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기업별 배분방식을 ①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하고, 적용방법은 영으로 정함

전환기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법률 제19191호 국조법 §84⑤ 신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 전환기 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법률 제19191호 국조법 부칙 §1 및 §6)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함

□ 참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의 시행시기

구 분	관련 개정 조문
2025.1.1. 시행	§58(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③~⑧
	§59(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①, §91(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①②④⑤
	법률제19191호 관련 §72(소득산입규칙의 적용)① §73(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①,④~⑦, §82(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2024.1.1. 시행	§77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법률제19191호 관련 §61(정의)①, §62(적용대상)③~④, §64(기업의 소재지)①,③, §66(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⑤, §68(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④, §69(실효세율의 계산)②~⑦, §70(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③~⑤, §72(소득산입규칙의 적용)⑧, §74(최소적용제외 특례)②, §76(조직재편에 대한 특례)④, §77(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③④, §79(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①⑤⑥, §80(적용면제), §81(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①, §8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④, §84(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⑤, §87(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①,
종전 규정에 준용	이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신고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09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176.4) 적용

(20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주세령 §7)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물가연동제 →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20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①)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12.31.까지 연장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주류면허법 §7)

(제한사유 추가)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2024.1.1. 이후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탁주(50만원 → 500만원), 기타 발효주류 등(200만원 → 500만원), 증류주, 주정(500만원 → 1천만원), 맥주(1천만원 → 2천만원)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37의2)

을 위반한 자

-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③)**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를 위해 '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단서 신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추가

-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금융기간관 형성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조합은 제외)을 납세의무자로 추가

-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03

2023 개정세법 현행-개정사항 비교 (상세본)

2023 개정세법 현행 - 개정사항 비교

01 국세기본법

01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기법 §26의2⑥7 신설)

현 행	개 정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특례대상 확대 (좌 동)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추 가〉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국기법 §28)

현 행	개 정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단서 신설〉	□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좌 동)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수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03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국기법 §35①)

현 행	개 정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예외)** ❶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좌 동) *

현 행	개 정
우선 징수 〈추 가〉 ❷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❷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04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국기법 §47의3)

현 행	개 정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① **(상속·증여세)** 미확정 상속·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②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 **(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좌 동) ④ **(소득·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조특령 §21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

(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현 행	개 정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 적용제외 확대 ○ (좌 동)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추 가〉	□ 적용제외 확대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 * (좌 동)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상속·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

(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07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국기법 §59②, 국기령 §62)

현 행	개 정
□ 불복청구* 시 선택 가능한 대리인 범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 확대
○ 변호사,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사	○ (좌 동)
○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한정**	○ (좌 동) - 다만, **소액사건(5천만원 미만) 한정**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08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신설

(국기법 §59의2)

현 행	개 정
〈신 설〉	□ 영세 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정부안)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수정)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

〈시행시기〉 '24.4.1.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09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

(국기법 §67)

현 행	개 정
□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 사유 ○ **금고 이상**의 형 ○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추 가〉	□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보완 및 추가** (좌 동)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

(국기법 §67)

현 행	개 정
□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 임기 3년 ○ **1차례 중임** 가능	□ 임기 확대 ○ (좌 동) ○ **1차례 연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

(국기법 §78)

현 행	개 정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 **조세심판원장** ○ **상임조세심판관: 전원(8인)** ○ **비상임조세심판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 구성 인원 합리화 ○ (좌 동) ○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 -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

〈개정이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구성하는 분부터 적용

12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국기법 §81의13)

현 행	개 정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로 함 *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중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1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
(국기법 §81의15)

현 행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단서 신설〉**	□ 청구요건 완화 ○ (좌 동)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제외**

〈수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4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

(국기법 §81의15⑤)

현 행	개 정
□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명확화** (좌 동)
〈추 가〉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

15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개 정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 **5천만원** 미만(시행령)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16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국기령 §55의2)

현 행	개 정
〈신 설〉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02 국세징수법

01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
(국징법 §55④)

현 행	개 정
□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추 가〉	□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좌 동) ○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개정이유〉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02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
(국징법 §56의2)

현 행	개 정
〈신 설〉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개정이유〉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0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신설
(국징법 §56의3)

현 행	개 정
〈신 설〉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 규정 신설 ○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 **압류통지서**가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송달**된 때 ○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04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국징법 §57)

현 행	개 정
□ 압류 즉시해제 사유	□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 동)
〈신 설〉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좌 동)

〈수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즉시 해제 사유 명확화

05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

(국징법 §71)

현 행	개 정
□ 공매보증 반환 대상 ○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 가〉	□ 대상 확대 (좌 동) ○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매수신청인**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를 통해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 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

〈수정이유〉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분부터 적용

06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국징법 §80)

현 행	개 정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 **체납자** ○ **세무공무원**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추 가〉	□ 제한 범위 확대 (좌 동) ○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07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국징법 §84②)

현 행	개 정
□ 매각결정기일 ○ **개찰일부터 7일 이내** **〈단서 신설〉**	□ 매각결정기일 변경 허용 ○ (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 1회에 한정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08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국징법 §84의2)

현 행	개 정
〈신 설〉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 **(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현 행	개 정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행령) ❶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❷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 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법률) (좌 동) *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 ❶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❷ 법률·회계·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 종사자
〈신 설〉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이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03 소득세법

01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	개 정
□ 사업소득 비과세 ○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월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득법 §12(3)마)

현 행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비과세 소득 확대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 행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❷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현 행	개 정
	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 **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14)

현 행	개 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좌 동) ○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6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법 §17)

현 행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 배당가산율 조정
❶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frac{9\%}{1-9\%}$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9.9%)
❷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07 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25①)

현 행	개 정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과세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3.12.31.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시행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08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⑤⑥)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 +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1,8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300만원</td></tr>
</table>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td><td>□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2,0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 +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2,000만원</td><td>1,800만원</td><td>800만원</td><td>600만원</td></tr>
</table>
○ 기준시가 6억원 이하</td></tr>
</table>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9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2)

현 행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시행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0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현 행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❶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좌 동) ❶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현 행	개 정
인: 공제한도 미적용 ❷ ❶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❷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59의4)

현 행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신 설〉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좌 동)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
□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 ~ '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대상기간 조정 ○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6.1.1. ~ '27.12.31.에 지급하는 소득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3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소득법 §86, 소득령 §149의3 신설)

현 행	개 정
□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좌 동) - (좌 동)

현 행	개 정
〈추 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 §88)

현 행	개 정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5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소득법 §92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1)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2)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3)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 결정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액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시

16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소득법 §95)

현 행	개 정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계산방법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자산 취득일~양도일**	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을 **'취득일 ~ 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② (좌 동)
〈단서 신설〉	○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❶ + ❷)** ❶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 ❷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시행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 필요경비 합리화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추 가〉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8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56의9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4②,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5②, §98의6④)

현 행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45의2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소득법 §164의3)

현 행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24년 시행)**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24년 시행) ○ 지연제출 가산세 등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26년 시행)** ○ (좌 동)

〈개정이유〉「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시기 유예

2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①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❶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❷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현 행	개 정
	○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개정이유〉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

현 행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500만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5①(8) 신설)

현 행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 (좌 동)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개정이유〉 장애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❶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 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❷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

현 행			개 정
구분		규 정 내 용	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①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예외 3년 -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2년 ○ 다음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면제	①항 (現 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짧은 단문 사용 및 호, 목 등을 활용하여 요건 등 분리 기술
	1호	분양전환 주택	②항 (現 ⑦)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2호	수용 등 주택	③항 (現 ③,④)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도표화
	3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	
	5호	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거주만 면제)	
②항		'17.8.3. - '17.11.9.까지의 조정지역	
③항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항		겸용주택 토지의 비과세 범위	
⑤항		보유기간 계산방법	
⑥항		거주기간 계산방법	
⑦항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⑧항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⑨항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⑩항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⑪항		1세대 1주택 특례 정의	
⑫항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구 분	비과세 범위
주택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건물+토지 전체
주택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건물+토지 중 주택 부분(「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 포함)

개 정	
④항 (現 ②,⑤,⑥,⑧,⑫)	• 보유·거주기간 계산 원칙 •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⑤항 (現 ⑨)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⑥항 (現 ⑩)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제고

26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5배 - 수도권 밖: 5배 ㉡ 그 밖의 지역: 10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27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

(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❶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구분	규 정 내 용
①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②항	**상속주택**
③항	공동상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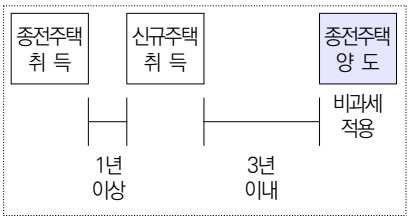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구분	규 정 내 용	❷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	
⑤항	**혼인 합가주택**	
⑥항	**문화재주택**	
⑦항	**이농·귀농 주택**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⑨항	이농주택 정의 및 요건	
⑩항	귀농주택 정의 및 요건	
⑪항	세대전원 귀농 후 양도요건	
⑫항	이농·귀농 미적용 요건 및 미적용 시 양도세 계산식	
⑬항	이농·귀농 적용 절차	
⑭항	농어촌주택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	
⑮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⑯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시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하는 경우 예외요건	
⑰항	삭제	
⑱항	1세대 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3년 이내 양도요건 관련 예외사항	
⑲항	상속주택 특례 관련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처리 규정	
⑳항	**장기임대주택**	
㉑항	장기임대주택 적용 예외사항	
㉒항	장기임대주택 기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산정방법 및 산정특례	
㉓항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적용사항	
㉔항	장기임대주택 적용시 필요 절차	
㉕항	장기임대주택 적용 관련 절차	

구분	규 정 내 용
①항	1세대 1주택 특례 **개괄규정**(신설)
②항	**일시적 1세대 2주택**(現 ①, ⑯)
③항	**상속주택**(現 ②, ③, ⑲)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現 ④)
⑤항	**혼인합가 주택**(現 ⑤)
⑥항	**문화재 주택**(現 ⑥)
⑦항	**농어촌 주택 관련**(現 ⑦, ⑨~⑭)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現 ⑧)
⑨항~⑫항	**장기임대주택**(現 ⑳~)
⑬항	기타(現 ⑮, ⑱)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

(소득령 §155⑳ ~ ㉕)

현 행

□ 장기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6개 항**에 걸쳐 **분산 서술**

- 특히, **특례 적용요건 사항**을 **3개 항**(20, 21, 23)에 나눠 **기술**

구분	규 정 내 용
⑳항	장기임대주택 등 정의 및 특례 적용 요건
㉑항	기간요건 충족 전 특례 적용
㉒항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㉓항	등록말소 임대주택 특례 적용
㉔항	특례 적용 신고
㉕항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

○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 (예) ⑳항: 각 호 제외한 본문만 926字

개 정

□ 조문 정비

❶ **유사 성격 조항**(現 20, 21, 23항)을 호,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

구분	규 정 내 용
⑨항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現 ⑳+㉑+㉓)
⑩항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現 ㉒)
⑪항	특례 적용 신고(現 ㉔)
⑫항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現 ㉕)

❷ **정의규정 신설**(①항개괄규정 內) 및 **복잡한 내용***은 **전형적 예시**를 **도표**로 제시

* (예) 직전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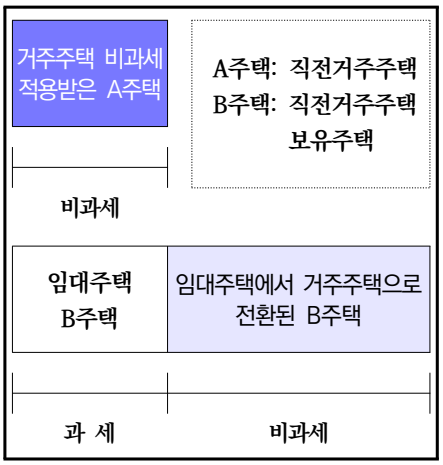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및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

(소득령 §167의3)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 개괄규정 없이 13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호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td><td>□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개괄규정 신설
○ 13개 유형을 소개하는 표 신설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정
<table>
<tr><th>구 분</th><th>유 형</th></tr>
<tr><td>1호</td><td>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외 소재 저가주택</td></tr>
<tr><td>2호</td><td>장기임대주택</td></tr>
<tr><td>3호</td><td>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td></tr>
<tr><td>4호</td><td>장기 사원용 주택</td></tr>
<tr><td>5호</td><td>양도소득세 감면 주택</td></tr>
<tr><td>6호</td><td>문화재주택</td></tr>
<tr><td>7호</td><td>상속주택</td></tr>
<tr><td>8호</td><td>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td></tr>
<tr><td>8호2</td><td>장기 어린이집</td></tr>
<tr><td>10호</td><td>일반주택</td></tr>
<tr><td>11호</td><td>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td></tr>
<tr><td>12호2</td><td>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주택</td></tr>
<tr><td>13호</td><td>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td></tr>
</table></td></tr>
</table>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❶ 변호사 등 전문직 ❷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❸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❹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❺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4 법인세법

01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현 행	개 정
□ 신탁소득 과세방식	□ 과세체계 정비
○ **(원칙)** 수익자 과세 ○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좌 동)
- **(수탁자 과세) ❶ ~ 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 ❶~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❶ ① ~ ③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❶ (좌 동)
❷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삭 제〉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❸ (좌 동)
- **(위탁자 과세) ❶ ~ 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 동)
❶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삭 제〉
❷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삭 제〉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❸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02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법 §18)

현 행	개 정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예외) ❶ ~ ❹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좌 동)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좌 동)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추 가〉	**❺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법 §18의2)

현 행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 (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❶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등의 수입배당금 ❷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❸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추 가〉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좌 동) ❹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❺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4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법인법 §76의12)

현 행	개 정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 (좌 동)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신고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05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

(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22)

현 행	개 정
〈신 설〉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❶ × ❷) ❶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또는 공제된 결손금 ❷ 연결사업연도 결손 시 연결세율(A) $(A) = \frac{\text{연결사업연도 결손금} \times \text{법인세율}}{\text{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개별소득금액 및 개별 결손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법인법 §113)

현 행	개 정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 **중소기업 간** 합병 시 ○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07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법인법 §120의4)

현 행	개 정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제출기한 명확화 ○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08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령 §12)

현 행	개 정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예외) ❶ ~ ❹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좌 동)
〈추 가〉	**❺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09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 인건비 〈추 가〉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좌 동)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개정이유〉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령 §39)

현 행	개 정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대 상) - ❶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 ❷ '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좌 동)
○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좌 동)
- ❶,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❶,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3.10.10.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

11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령 §57)

현 행	개 정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 **보험금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좌 동)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정이유〉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법인령 §72)

현 행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05 조세특례제한법

0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조특법 §7)

현 행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02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7)

현 행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도·소매업 감면율** (구 분 / 소기업* / 중기업: 수도권 10% 0%, 지 방 10% 5%) *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가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10% ➜ 20%	0% ➜ 10%	
지 방		5% ➜ 15%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03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대상)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 (내용)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지원

04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현 행	개 정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 **(대상) 중소·중견기업** ○ **(내용)** 특허권등 **기술 이전 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

05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현 행	개 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 + 2년 50%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5년 50%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현 행	개 정
특구명 / 감면율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5년말 종료 ○ (적용기한) '23.12.31.	○ '25.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속 지원

06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현 행	개 정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인수 시 과세특례** ○ **(과세특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 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 ○ **(지분율 요건)**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 (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 ○ **(취득기간)**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 (좌 동) ○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7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13①)

현 행	개 정
□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적용대상**) ❶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❷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❸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확대 ❹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8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

(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❶ ~ ❷를 통해 취득한 주식등 ❶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❷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추 가〉	○ ❶ ~ ❸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❶ (좌 동) ❷ (좌 동) 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구주매입 제외)	○ (좌 동)
○ **(공제액)** - **(❶, ❷를 통한 취득) 출자가액의 5%** 〈신 설〉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좌 동) - **(❸을 통한 취득) 출자 시 투자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

(조특법 §14)

현 행	개 정
□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❷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 주식 등 ❸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❹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❺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좌 동)
〈추 가〉	❻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특법 §16)

현 행	개 정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❷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❸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좌 동)
〈추 가〉	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

현 행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대상**) ❶ 또는 ❷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❶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❷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좌 동)
〈**추 가**〉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 (좌 동)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 ~ 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좌 동)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1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특법 §25의7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 **(공제율) 3%** ○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적용기한) '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8의4)

현 행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적용기한 연장 ○ ~ '24.12.31 취득분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16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❶과 ❷를 모두 충족 ❶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❷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요건) ❶과 ❷를 모두 충족 ❶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❷ (좌 동) (좌 동) ○ '24.12.31.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1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좌 동)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좌 동)
〈추 가〉	- **컴퓨터학원 등**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8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 고용유지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	(좌 동)

현 행	개 정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 **(기본공제)** 10억원 ○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좌 동)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연부연납 기간)** 5년	○ **(연부연납 기간) 15년**
○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시행시기〉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30의6·§71)

현 행	개 정
〈신 설〉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 **(범죄 행위) 가업**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 **(행위 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3)

현 행	개 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적용요건)** ❶ + ❷ ❶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❷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개 정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❶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❷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❸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❹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의2)

현 행	개 정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①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3.12.31.	 - (좌 동) - '26.12.31.
② **분할납부** -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적용기한)** '24.1.1. ~ '26.12.31.	 - (좌 동) - '27.1.1.~'29.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24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8)

현 행	개 정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자금 선순환 지원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52)

현 행	개 정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 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 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 **(과세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2)

현 행	개 정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 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 **(과세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7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66 ~ 68)

현 행	개 정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배당소득세)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4.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8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

현 행	개 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요건**) ❶ + ❷ + ❸ ❶ 농지소재지 거주 ❷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 65세~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 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 (**감면율**) 100%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29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조특법 §70의2)

현 행	개 정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제공 ○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 ○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 **〈단서 신설〉**	□ 취득가액 등 명확화 (좌 동)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개정이유〉 특례 적용 시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30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

(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현 행	개 정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 특례 대상·요건 확대 (좌 동) **-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
〈신 설〉 ○ **(요건)** ❶ + ❷ + ❸ ❶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❷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❸ 임차기간(7 ~ 10년) 내 환매	○ **❶ 요건 확대** **❶ 직접 경작한 농지 →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 (좌 동)

〈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7)

현 행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❶ + ❷ ❶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❷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 15%** (3년 만기 채권: 30%, 5년 만기 채권: 40%)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32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7의2)

현 행	개 정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 ❶ + ❷ + ❸ ❶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❷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❸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 (과세특례) ❶**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❷**과세이연**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33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개 정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 ❶ + ❷ ❶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 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❷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❶ **공장: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❷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기업 지원

3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좌 동)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연장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비과세한도) 500만원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5.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36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현 행	개 정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좌 동)
〈단서 추가〉	-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7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조특법 §88의5)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자) 조합 등*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
○ (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 예탁금 3천만원 한도
- 출자금 1천만원 한도
○ (세율 및 적용기한)
<table>
<tr><th>소득발생 기간</th><th>'25.12.31. 까지</th><th>'26.1.1.~ '26.12.31.</th><th>'27.1.1. 부터</th></tr>
<tr><td>감면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
</table></td><td>□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좌 동)
- 출자금 2천만원 한도
○ (좌 동)</td></tr>
</table>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시행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8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19)

현 행	개 정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 (**적립한도**) 월 40만원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월 55만원('25.1.1.부터) ○ **'26.12.31.까지 가입분**

〈수정이유〉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

〈시행시기〉 '2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39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현 행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3.12.31.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 '24.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0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조특법 §91의22)

현 행	개 정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 납입한도 완화
○ **(가입요건)** ❶만 19~34세 ❷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주식 등 ※ 현재는 적금상품만 출시 ○ **(세제지원)**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다음요건 충족 시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일시납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 • **가입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좌 동)

〈수정이유〉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1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조특법 §91의24)

현 행	개 정
□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가입대상 확대 (좌 동) •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자격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좌 동) ○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4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

현 행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4.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44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 **(대상 농어촌주택)** ❶&❷&❸ ❶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❷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옥 4억원 이하)	□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❶ **'기회발전특구' 포함**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좌 동)

현 행	개 정
❸ '03.8월 ~ '25.12월간 취득 ○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수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5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현 행	개 정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❶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❷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❹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❺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 (특례내용) ①압류·매각 유예, ②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좌 동)
○ (신청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6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10)

현 행	개 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❶ '22.12.31. 이전 폐업 및 '25.12.31. 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❷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신청기한)** '26.12.31.	○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❶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 까지 재기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47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3)

현 행	개 정
〈신 설〉	□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수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시행시기〉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48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7)

현 행	개 정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 지급금액 인상 ○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9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100의14~18, 조특령 §100의18)

현 행	개 정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 * 동업기업(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소득 과세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신 설〉	□ 예외 신설 ○ (좌 동)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 *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신 설〉	□ 예외 신설 ○ (좌 동) - (예외)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제외**

〈개정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신청 특례〉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0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100의28·§100의29)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홑벌이 가구
<table>
<tr><th>총급여액등</th><th>자녀장려금</th></tr>
<tr><td>2,100만원 미만</td><td>자녀 1인당 80만원</td></tr>
<tr><td>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td><td>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td></tr>
</table>
- 맞벌이 가구
<table>
<tr><th>총급여액등</th><th>자녀장려금</th></tr>
<tr><td>2,500만원 미만</td><td>자녀 1인당 80만원</td></tr>
<tr><td>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td><td>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td></tr>
</table></td><td>□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홑벌이 가구
<table>
<tr><th>총급여액등</th><th>자녀장려금</th></tr>
<tr><td>2,100만원 미만</td><td>자녀 1인당 100만원</td></tr>
<tr><td>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td><td>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td></tr>
</table>
- 맞벌이 가구
<table>
<tr><th>총급여액등</th><th>자녀장려금</th></tr>
<tr><td>2,500만원 미만</td><td>자녀 1인당 100만원</td></tr>
<tr><td>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td><td>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td></tr>
</table></td></tr>
</table>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의5)

현 행	개 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기간 유예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좌 동)
○ **(적용기간)** '24.1.1. ~ '25.12.31.	○ '26.1.1. ~ '27.12.31.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52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104의11)

현 행	개 정
□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 손금산입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추 가〉	○ (좌 동) - **금융기관**
○ **(적용기한)** '24.12.31.	○ (좌 동)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3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2)

현 행	개 정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의 신용회복 지원

5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104의15, §127)

현 행	개 정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❶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❷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 **(적용기한)** '26.12.31.

현 행	개 정
□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 ○ **(대상 세제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 가〉**	□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 ○ **배제 대상 추가** (좌 동)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조특법 §104의24, §118의2)

현 행	개 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 **(감면내용)** ❶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5년 100% + 2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❷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 **(업종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추 가〉**	□ 업종요건 상향입법 ○ (좌 동) ○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❶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7년 100% + 3년 50%** ❷ (좌 동) - 관세 감면 ❶ 완전복귀: 5년 100% ❷ 부분복귀: 5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현 행	개 정
	○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56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32)

현 행	개 정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57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 **(적용요건)** ❶ ~ ❹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❶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❷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❸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❹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매년 10% 상향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 3의2)

현 행	개 정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도시철도공사, ③국가철도공단, ④「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한국철도공사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59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105의3 신설)

현 행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5.12.31.	□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 (좌 동) - '24.12.31.
〈신 설〉	□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 (**대상**)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환급액**)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 ○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 ○ (**적용기한**) '25.1.1. ~ '27.12.31.

〈개정이유〉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현 행	개 정
□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학생 및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급식 지원

6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3)

현 행	개 정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공급주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 (**공급대상**)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6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4의5)

현 행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방용역 ○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

63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6①9)

현 행	개 정
□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64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①9의2)

현 행	개 정
□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 대상 추가
○ **적용대상**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추 가〉	- (좌 동)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개정이유〉 농어촌버스 경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5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①1)

현 행	개 정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

66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조특법 §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 신설)

현 행	개 정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 적용 대상 확대
○ 금 관련 제품	○ (좌 동)
○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좌 동)
〈신 설〉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적용기한 연장
○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및 활용 - 운수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68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5.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69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2)

현 행	개 정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 부탄: 161원/ℓ(전액) ○ (**한도**) 연간 30만원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

70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kg (23.39원/ℓ)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71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6②)

현 행	개 정
□ 인지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등 * ❶ 농·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동일인 명의 융자금액 1억 한도) ❷ 어린이예금통장·농·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❸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❹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❺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영세한 농어민·창업중소기업 지원

72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 증권거래세 면제 ○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73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 증권거래세 면제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74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 증권거래세 면제 ○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75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 (감면율) 50%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7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 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10, §121의11)

현 행	개 정
□ ❶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 및 ❷**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면제**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77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	개 정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 (좌 동)
○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좌 동) **- 평화경제특구**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수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

〈시행시기〉 '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78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21의19)

현 행	개 정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 추징사유 합리화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 **〈단서 신설〉**	○ **예외사유 신설** - 다만,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 투자·고용 요건 미달 ○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좌 동)

〈개정이유〉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⑦,⑧)

현 행	개 정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 ①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또는 ②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①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또는 ②수협은행 → 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	○ (좌 동)

현 행	개 정
사용용역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80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6~31,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❶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❷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❸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❹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❺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❻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8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121의33)

현 행	개 정
〈신 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 **(적용기한)** '26.12.31.

〈수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82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21의34)

현 행	개 정
〈신 설〉	□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요건)** ❶ & ❷ & ❸ ❶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❷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 ❸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①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현 행	개 정
	②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수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3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21의35)

현 행	개 정
〈신 설〉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수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8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월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7% *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좌 동) - (**월세**)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7% * 해당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소득자 부담 완화

85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 (**공제액**) ❶, ❷ 중 큰 금액 ❶ 산출세액 × $\frac{1}{2}$ × $\frac{\text{매입자납부익금·손금} \times \text{증가분}}{\text{전체익금·손금}}$ ❷ 산출세액 × $\frac{\text{매입자납부익금·손금} \times \text{의 } 5\%}{\text{전체익금·손금}}$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86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현 행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❸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❹ 전통시장	40%
❺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 (**적용기한**) '25.12.31.

개 정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좌 동)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구 분	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❸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 ~ 12.31. 사용분)	30% (40%)
❹ 전통시장 ('23.4.1. ~ 12.31. 사용분)	40% (50%)
❺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40% (80%)
❻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10%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공제한도**)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24년 증가분	**1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87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 ○ **(공제금액)** 종이발급: 9.4원, 온라인발급: 8.4원 ○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폐지 (좌 동) ○ **(삭제)**

〈수정이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88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⑨)

현 행	개 정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89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좌 동)
〈단서 신설〉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❶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❷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시행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0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136)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table><tr><th>수입금액 구간</th><th>한 도</th></tr><tr><td>100억원 이하</td><td>0.3%</td></tr><tr><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0.2%</td></tr><tr><td>500억원 초과</td><td>0.03%</td></tr></table></td><td>□ 손금산입 한도 확대
(좌 동)</td></tr>
<tr><td>○ 추가 한도
❶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신 설〉</td><td>○ 추가 한도 특례 신설
(좌 동)
❷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 + 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td></tr>
</table>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1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조특령 §11의3③·§11의4④)

현 행	개 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가치금액*)** Max(ⓐ, ⓑ)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 세액공제 범위 확대 (좌 동) - (좌 동)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9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특령 §65)

현 행	개 정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50억원 × 소득률 ○ 작물재배업 외 소득: 5년간 50% 감면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좌 동)

현 행	개 정
③ 농산물 구매·비축 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은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93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조특령 별표7의2, 부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 국가전략기술 대상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신 설〉**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분야** • (기술) 8개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7의2) ❶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❷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❸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❹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❺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❻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현 행	개 정
	❼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❽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 (사업화시설) 4개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6의2) ❶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❷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❸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❹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

〈적용시기〉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62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 R&D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현 행	개 정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
○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3%	○ (좌 동)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 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지출실적 산정기준**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 ❶ or ❷ **선택 가능** ❶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❷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위반시 제재 수준 변경**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시행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02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개 정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좌 동)
〈신 설〉	○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 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의 감사보고서 * 대상: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 (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좌 동)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53의2)

현 행	개 정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❹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

현 행	개 정
	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신 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수정이유〉 혼인·출산 지원 확대

〈시행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상속인의 가업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업종 유지요건 완화**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07 부가가치세법

0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2①)

현 행	개 정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❶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❷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구 분	공제율
❶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6.12.31.까지)	9/109
❷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2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좌 동)
〈추 가〉	- **판매 대행·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 ❶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❷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03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

(부가법 §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좌 동)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4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현 행	개 정
□ 간이과세 포기신고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 설〉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좌 동)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5)

현 행	개 정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❶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❷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❺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좌 동) ❺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

(부가령 §40①13)

현 행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 면제대상 추가
❶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❷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❸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❹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좌 동)
〈추 가〉	❺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운용사**가 **모펀드에 공급**하는 용역 ※ 공동운용사의 경우 모펀드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부분만 면세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7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10의4①③, 시행규칙 §2①)

현 행	개 정
□ 사후환급 최소 기준 ○ **1회** 거래가액 **3만원 이상**	□ 최소 기준 인하 ○ **1만 5천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만원 미만** ○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 1회 한도 상향 ○ **70만원 미만** ○ (좌 동)
□ 도심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 한도 상향 ○ **600만원 이하**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환급 분부터 적용

08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01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20	14 (가정·상업용)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세법 §8, 주세령 §7)

현 행	개 정
□ 주세율(종량세)의 물가 연동 ○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 **(조정주기) 매년 조정** ○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세율 = 직전연도 말 세율 × (1+직전연도 가격변동지수*)** *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내에서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등을 고려하여 결정	□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 (좌 동) ○ **비정기 조정** ○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개정이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세법 §8①)

현 행	개 정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 ○ **(세율)** 1㎘당 708,50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85,700원/㎘)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

04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7)

현 행	개 정
□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신청 등에 대한 제한사유**	□ 제한 사유 추가
❶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협력의무위반, 전통주추천요건위반 등 ❷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도과**	(좌 동)
❸ **면허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 **임원** 중에 ❶,❷ 등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❸ 면허 신청법인·전환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도 추가
❹ 면허신청인 등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❹ (좌 동)
〈추 가〉	❺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경우 * 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주류제조·판매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5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

(주류면허법 §13)

현 행	개 정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	□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의 **5% 이상** ○ 시설기준 등 **요건 위배** 등 ○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좌 동)
- **탁주: 50만원**	- **5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200만원**	- **500만원**
- **증류주, 주정: 500만원**	- **1천만원**
- **맥주: 1천만원**	- **2천만원**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 기준 현실화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 탁 주: (현행) 50만원 → (정부안) 100만원 → (수정)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현행) 200만원 → (정부안) 400만원 → (수정) 500만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6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주류면허법 §38)

현 행	개 정
□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대상) ❶ 주세보전및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❷ 납세증명표지없는 주류나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❸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추 가〉	(좌 동) ❹ **주류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37의2)을 **위반**한 자
○ (효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좌 동)

〈개정이유〉 주류거래질서 관련 과태료부과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07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인지세법 §8③)

현 행	개 정
□ 인지세 납부기한	□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 (원칙)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단서 신설〉	○ (좌 동)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개정이유〉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

0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추가
○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추 가〉	○ (좌 동)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9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보험업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추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추 가〉	○ (좌 동) ○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조합은 제외)

〈개정이유〉 금융기관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특법 부칙 §2)

현 행	개 정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 '24.6.30.	□ 유효기간 연장 ○ '34.6.30.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0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 개선

(국조법 §16)

현 행	개 정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2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국조법 §51의2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0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국조법 §54)

현 행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 금융회사 등 ○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좌 동)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4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58, §59, §91)

현 행	개 정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❶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❷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05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

(국조법 §61①1가)

현 행	개 정
□ 기업의 범위 ○ **법인 〈단서 신설〉** ○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현 행	개 정
□ 그룹의 정의 ○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단서 신설〉**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 (좌 동) ○ (좌 동)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 §100② 신설)

현 행	개 정
□ 고정사업장의 정의 ○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❶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❷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❸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❹ 위의 ❶~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

(국조법 §61①6)

현 행	개 정
□ 최종모기업의 정의 ○ ❶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❷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을 것 〈추 가〉	□ 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 (좌 동) ○ **그룹의 본점** ○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최종모기업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9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

(국조법 §61①18, §79①)

현 행	개 정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❶**개별 계산***, ❷**투시과세처리****, ❸**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단서 신설〉**	□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 (좌 동)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개정이유〉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
(국조법 §62④)

현 행	개 정
□ 제외기업의 범위 * 제외기업 범위(§62의③)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당연제외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임의제외 ○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현 행	개 정
□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미포함** 〈신 설〉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 **(원칙)** 좌 동 ○ **(특례)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 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

(국조법 §68⑤ 및 국조령 §119 신설)

현 행	개 정
□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의 증감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 방법
❶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에서 **차감**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다만, **대상조세 감소액**이 해당국가에서 **백만유로 미만**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경정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 가능** 〈신 설〉	○ (좌 동) ❷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 §69④ 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현 행	개 정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신 설〉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 (좌 동) ○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❶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계산 ❷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 및 국조령 §125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 ❶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 ❷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 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현 행	개 정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 하거나 많을 것** ❸ **(관리요건)** ❶·❷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 추가세액의 총액은 ❶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❷기업별로 배분	
❶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배분비율 = 50% × (해당 국가의 종업원수 / 모든 국가의 종업원수) + 50% × (해당 국가의 유형자산 / 모든 국가의 유형자산) * 모든국가: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	❶ (좌 동)
❷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배분비율 = 50% × (해당 기업의 종업원수 / 모든 기업의 종업원수) + 50% × (해당 기업의 유형자산 / 모든 기업의 유형자산) * 모든기업: 추가세액 배분받은 국가內 기업	❷ ①·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

(국조법 §73⑥ 신설)

현 행	개 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단서 신설〉**	○ (좌 동)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

(국조법 §76④ 및 국조령 §132④ 신설)

현 행	개 정
□ 조직재편 처리 규정	□ 특례적용 내용 추가
○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	○ (좌 동)

현 행	개 정
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추 가〉	-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⑥ 및 국조령 §141 신설)

현 행	개 정
□ 과세분배방식*의 적용 조건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주주구성기업이 받는 투자 구성기업의 **분배금액**에 대해 **15%이상**으로 **과세**될 것 〈신 설〉	□ 분배금액 범위의 보완 ○ 분배금액은 **실제분배**와 **간주분배**를 **포함**한 금액

〈개정이유〉 투자구성기업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
(국조법 §82②)

현 행	개 정
□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 이하	□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개정이유〉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국조법 §84⑤ 신설)

현 행	개 정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 (좌 동)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좌 동)
〈신 설〉	○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국조법 §87① 및 국조령 §150 신설)

현 행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신 설〉	□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❶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❷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❸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❹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❺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조법 부칙 §1)

현 행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규칙**: '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 '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25.1.1.

〈개정이유〉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23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국조령 §101·102 신설)

〈 법 개정('22.12) 내용(§62②)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개 정
〈신 설〉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유의사항〉** 이 자료는 2023.12.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개정세법〉 중 각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 시행령 개정내용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2023개정세법〉에서 제시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하되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동 있는 경우는 이름 포함하였으나, 향후 정부의 제정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2023년 핵심 개정세법] 만든 사람들

감수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부회장 김선명, 연구이사 김연정, 국제이사 백낙범
(국민의 세무사TF) 이동기, 고경희, 김두천, 김선일, 김희철, 방범권, 손상익, 손창용, 윤수정, 이강오, 이종훈, 이한우, 이현진, 장동하, 장보원, 정아영, 지병근

편집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최지훈, 황영현, 김영준, 정윤아, 차수현, 안규광, 정은주

※ 알려드립니다. 혹시 책자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전화 02-521-9544, 이메일 tax9544@kacpta.kr)으로 연락바랍니다

2023 핵심 개정세법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구 재 이
발행처: 한국세무사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동)
등 록: 1991.11.20. 제21-286호
TEL 02-597-2941 FAX 02-597-2940

저 자 와
협의하에
인지생략

〈이 책의 내용을 한국세무사회의 허락없이 무단복제 출판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서는 항상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